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⁴ A61K 31/66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1991-0000163 1991년01월29일
(21) 출원번호	특1989-0007676	
(22) 출원일자	1989년06월03일	
(30) 우선권주장	63-137925 1988년06월03일 일본(JP)	
(71) 출원인	센주세이야쿠 가부시끼가이샤 요시다 쇼지	
(72) 발명자	일본국 오오사카후 오오사카시 쥬오꾸 히라노마찌 2쵸메 5방 8고 마끼노 다다시 일본국 오오사카후 이바라끼시 미시마오까 2쵸메 12-39-1 도이 고지 일본국 오오사카후 스이따시 센리야마히가시 1쵸메 15-16-301 마쓰오까 마사요시 일본국 오오사카후 하비끼노시 하비끼가오까 8쵸메 2-9 쓰보이 도시하루 일본국 오오사카후 셋쓰시 쇼자꾸흔마찌 2쵸메 10-5	
(74) 대리인	이준구, 김승호	

심사청구 : 없음

(54) 고형 약학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고형 약학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소디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와, 비타민 B₁, 활성을 갖는 비타민 B₁염과 비타민 B₁ 유도체로 구성된 군에서 건택된 화합물을 함유하는 고형 약학 제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지온용융 지방 또는 유상물질을 더 함유하고 있는 고형 약학 제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저온 용융 지방 또는 유상물질이 탄화수소, 고급지방산, 고급알코올, 폴리히드릭 알코올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히드릭 알코올 고급 알코올 에테르 및 알킬렌 옥사이드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물질인 고형 약학제제.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저온용융 지방 또는 유상물질의 양이 디소디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매1중량부당 적어도 0.1중량부인 고형 약학제제.

청구항 5

제1항,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인간 안정피로의 치료제로서 작용하는 고형 약학 제제.

청구항 6

제1항,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제제가 정제, 과립제, 산제 또는 캡슐제의 형태로 있는 고형약학 제제.

청구항 7

제1항, 2항 또는 3항에 있어서, 인간 안정피로의 치료제로서 작용하고 선택된 화합물이 푸르실 티아민 또는 그들의 염인 고형 약학 제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선택된 화합물이 푸르실 티아민 히드로 클로라이드인 고형 약학 제제.

청구항 9

디소디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와, 비타민 B₁활성을 갖는 비타민 B₁유도체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함유하는 고형 약학 제제를 안정피로로 고통받은 인간에게 경구 투여함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의 안정피로 치료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디소디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와 선택된 화합물의 1일 복용량이 안정 피로로 고통 받는 인간의 체중kg당 각각 대략 0.7 내지 7mg 및 대략 0.2 내지 5mg인 안정 피로 치료방법.

청구항 11

제9항 또는 10항에 있어서, 선택된 화합물이 푸르실 티아민 또는 그들의 염인 안정피로 치료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선택된 화합물이 푸르실 티아민 히드로클로라이드인 안정피로 치료방법.

청구항 13

저온용융 지방 또는 유상물질을 적어도 디소디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와 혼합하고, 결과된 혼합물을 가압하에 성형하고, 및 그렇게 수득된 고형 제제를 비타민 B₁활성을 갖는 비타민 B₁염과 비타민 B₁유도체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 코우팅시키거나 또는 혼합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형 약학 제제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저온용융 지방 또는 유상물질이 탄화수소, 고급지방산, 고급알코올, 폴리히드릭 알코올 지방산 에스테르, 폴리히드릭 알코올 고급 알코올 에테르 및 알킬렌 옥사이드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된 물질인 고형약학 제제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제제가 정제, 과립제, 산제 또는 캡슐제의 형태로 있는 고형약학 제제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술된 화합물이 푸르실티아민 또는 그들의 염인 고형약학 제제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술된 화합물이 푸르실티아민 히드로클로라이드인 고형 약학 제제의 제조방법.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